

Ma.c.7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

1995년 3월 17일 - 3월 18일

장소 :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주최 : 노동정책연구소

후원 :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FES)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샷

노동정책연구소

차 례

1. 워크샷 진행순서	1
2.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 연구	2
3. 참고자료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 예규)	44
2) 외국인력 현황과 대책 (노동부장관 기자 간담회)	48

외국인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순서

3월 17일 3시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도착
3시 - 4시	인사의 시간
4시 - 6시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 및 질의 응답
6시 - 7시	저녁식사
7시 - 8시반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발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노동조합)
8시반-11시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및 유형별 대책토론
11시반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친목의 시간
3월 18일 7시	기상
8시 - 9시	아침식사
9시 - 12시	고용허가제와 연수제도에 대한 정책토론
12시- 1시	워크숍 총평가 및 정리
1시	점심 식사 후 해산

외국인노동자의 생활 실태 조사 연구

노동정책연구소

<표 1> 조사대상자의 국적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네팔	112	28.5
중국	105	26.7
필리핀	84	21.4
방글라데시	40	10.2
미얀마	18	4.6
파키스탄	11	2.8
인도네시아	5	1.3
나이지리아	4	1.0
이란	3	0.8
인도	3	0.8
스리랑카	3	0.8
기타 아프리카 나라	2	0.5
베트남	2	0.5
가나	1	0.3
	393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현재 출입국 관리법 상의 지위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관광·방문 사증, 체류기간 이내	54	13.7
관광·방문 사증, 체류기간 초과	249	63.4
연수 사증, 산업체 근무	68	17.3
연수 사증, 체류 기간 초과	22	5.6
	393	100.0

<표 3> 조사대상자의 법적 체류자격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325	82.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68	17.3
	393	100.0

<표 4> 조사대상자의 국적 및 법적체류자격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104	26.5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221	56.2
산업기술연수생	68	17.3
	393	100.0

<표 5> 조사대상자의 취업 업종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농업 및 수렵업	8	2.5
임업	1	0.3
어업	1	0.3
금속 광업	11	3.4
기타 광업	5	1.5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1	3.4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50	15.4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26	8.0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3	4.0
화학물·석유·석탄제품 제조업	47	14.5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	0.6
제1차 금속 산업	26	8.0
조립 금속 제품, 기계 제조업	24	7.4
기타 제조업	30	9.3
전기·가스 및 증기업	16	4.9
종합 건설업	20	6.2
전문직별 건설업	7	2.2
도매업	2	0.6
소매업	3	0.9
음식·숙박업	12	3.7
사업 서비스업	1	0.3
사회 서비스업	2	0.6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5	1.5
국제 기구 및 기타 외국 기관	1	0.3
무응답	69	Missing
	324	100.0

<표 6> 조사대상자의 취업 직종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농업 및 축산 종사자	7	2.2
임업 종사자	1	0.3
광원	2	0.6
금속 가공 처리공	12	3.7
목재 가공 종사자	16	4.9
화학물 가공공	5	1.5
방직공·제직공·편직공	6	1.9
가죽 처리공	1	0.3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13	4.0
담배 제조공	2	0.6
의복 제조공, 재봉공	28	8.6
제화공, 가죽 제품 제작공	2	0.6
가구 제조공, 관련 목공	10	3.1
대장공, 공구 제작공	10	3.1
기계 설비공, 기계 조작공	8	2.5
전기 설비공 및 관련공	21	6.5
연관공·용접공·판금공	9	2.8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2	0.6
유리 성형공, 도기공	2	0.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	34	10.5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공	8	2.5
인쇄공	10	3.1
도장공	2	0.6
벽돌공, 목공 및 건설 노동자	20	6.2
고정 기관 및 관련 장비 운전사	1	0.3
운전사	1	0.3
단순 노무자	34	10.5
기타 생산·기능직 종사자	22	6.8
요리사, 식당 종업원	15	4.6
가정부, 식모	7	2.2
기타 서비스직 종사자	3	0.9
사무직 종사자	2	0.6
외국어 학원 강사	2	0.6
가수 및 무용수	2	0.6
기타 전문·기술직 종사자	3	0.9
구직자	1	0.3
무응답	69	Missing
	324	100.0

<표 7> 조사대상자의 취업 기업규모

Value Label	Frequency	Percent
1~9명	76	19.3
10~29명	132	33.6
30~49명	22	5.6
50~99명	18	4.6
100~299명	34	8.7
300명 이상	4	1.0
무응답	107	Missing
	393	100.0

<표 8>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특성

구분	중국	고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전체
주요변수							
남자 비율***(%)	60.0	57.1	100.0	83.9	91.9	74.6	
평균 연령**(세)	43.4	30.8	29.2	27.8	28.6	32.9	
기혼자 비율***(%)	81.0	47.5	27.5	39.3	29.7	49.9	
교육년수**(년)	10.6	12.1	10.1	9.6	12.2	10.7	
식구 수***(명)	4.5	6.9	8.4	6.9	6.3	6.4	
본국 거주지: 도시***(%)	75.2	45.5	36.7	45.5	73.5	55.0	
본국 출생지: 도시**(%)	46.4	36.4	34.0	37.8	78.8	42.9	
본국 실업자 비율**(%)	17.5	19.2	26.1	23.1	11.4	20.2	
이농 경험률***(%)	33.8	51.6	58.1	50.0	25.0	44.6	
제3국 경유율***(%)	2.9	8.9	72.0	50.0	37.8	30.4	
해외여행 경험률***(%)	11.8	30.3	66.7	59.1	41.9	40.9	
제3국 취업률(%)*	5.6	17.7	12.2	21.5	11.4	14.4	
제3국 취업계획률***(%)	16.7	60.0	28.0	32.1	30.0	33.7	
평균 입국비용***(US\$)	1417.4	1807.9	2619.7	1759.7	1790.4	1834.8	
조사대상자 수(N)	105	84	51	112	37	393	

* p<.05 ** p<.01 *** p<.001

<표 9>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건 비교 (단위: 시간, 원)

구분	하루 노동시간	하루 여가시간	월평균수입	월평균소비	월평균축금	
체류자격	불법체류자(N=325)	11.0	3.6	628,969	196,191	322,398
	산업연수생(N=68)	10.6	4.1	310,043	87,705	121,082
	평균차이 검정(F값)	2.1	0.7	134.7***	36.4***	55.0***
출신국가	중국 교포(N=105)	10.9	3.5	829,608	241,611	219,444
	필리핀(N=84)	10.5	4.2	483,404	150,317	297,246
	방글라데시·파키스탄(N=51)	11.6	5.2	532,240	174,255	325,077
	네팔(N=112)	10.8	4.4	560,566	176,765	333,256
	기타(N=37)	11.0	1.9	452,258	128,250	168,971
평균차이 검정(F값)	3.3*	4.0**	38.3***	7.4*	6.9***	

* p<.05 ** p<.01 *** p<.001

<표 10> 출신국가별·체류자격별 외국인노동자의 직업만족도·생활만족도

만족도	구분	출신 국가					체류자격		전체
		중국 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현재의 일		0.69	0.86	0.98	0.78	0.29	0.84	0.27	0.76
생활 전반		0.60	1.13	1.13	1.16	0.42	1.10	0.59	1.00
조사대상자 수(N)		105	84	51	112	37	325	68	393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에 3점, "만족한다"에 2점,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에 1점,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에 0점, "다소 불만인 편이다"에 -1점, "불만이다"에 -2점, "매우 불만이다"에 -3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11> 외국인노동자의 해외취업과 한국 선택 이유

구분	응답 내용	%
해외취업 선택이유 (N=366)	① 돈을 벌기 위하여	87.3
	②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하여	63.9
	③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51.6
	④ 본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취업을 위하여	22.1
	⑤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하여	21.9
	⑥ 친척·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10.1
	⑦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6.0
	⑧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었다	4.6
한국 선택이유 (N=357)	①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60.8
	② 한국에 친근감이 가기 때문에	39.2
	③ 임금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38.4
	④ 입국 사증을 발급 받기가 비교적 쉬우므로	31.1
	⑤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친척·친지의 소개 때문에	26.3
	⑥ 한국인 친척·친지의 초청 때문에	24.6
	⑦ 입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15.7
	⑧ 체포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13.7
	⑨ 미국이나 일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7.0
한국 정보원천 (N=346)	①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	52.3
	② 올림픽게임·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	50.0
	③ 언론 매체의 뉴스 혹은 보도 기사	49.4
	④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원	29.2
	⑤ 영화, 텔레비전의 연예·오락물	22.5
	⑥ 상품 광고	20.5
	⑦ 한국산 상품	14.5
	⑧ 본국 정부의 홍보	10.7
	⑨ 한국 정부의 홍보	5.8
한국취업 정보원천 (N=332)	① 친척·친지	70.5
	② 이웃 사람	53.3
	③ 직장(회사·공장·농장) 동료	38.9
	④ 언론 매체	35.5
	⑤ 학교 친구	16.6
	⑥ 교과서 이외의 책	16.6
	⑦ 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12.0
	⑧ 학교 교과서	4.8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표 12>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생활문제

(단위: %, N=309)

직장생활에서의 문제	%
① 장시간 노동	63.8
② 저임금	41.1
③ 체불 임금	23.6
④ 열악한 작업 조건	21.7
⑤ 육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19.4
⑥ 한국인과의 차별	19.1
⑦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14.9
⑧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	8.7
⑨ 육체적 폭력: 구타	8.4
⑩ 직업병	8.1
⑪ 산업 재해	7.1
⑫ 기타	6.5
⑬ 사장과의 갈등	5.7
⑭ 육체적 폭력: 빵을 때린다	5.5
⑮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	3.6
⑯ 육체적 폭력: 괴롭힌다	3.2
⑰ 육체적 폭력: 성적 희롱	3.2
⑱ 육체적 폭력: 발로 걷어찬다	2.0
⑲ 여러 가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1.9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표 13>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단위: %, N=272)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
① 산업 재해 보상 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76.8
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7.7
③ 지방 관서에 상담소 또는 민원 센터를 설치한다	47.1
④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33.8
⑤ 구직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7.2
⑥ 공무원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14.3
⑦ 한국인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6
⑧ 주거·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0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표 14>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조합 설립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7.2	11.4	13.3	12.5
아니다	41.4	41.5	31.7	39.2
모르겠다	41.4	47.2	55.0	48.3
	100.0	100.0	100.0	100.0
	29	176	60	265

<표 15>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4.3	2.3	5.1	4.3
아니다	60.7	84.2	94.9	84.1
모르겠다	25.0	13.5		11.6
	100.0	100.0	100.0	100.0
	28	171	59	258

Chi-Square=22.4 DF=4 p<.001

<표 16>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본국에서 노동조합원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50.0	28.5	17.5	28.7
아니다	43.8	62.8	82.5	64.8
모르겠다	6.3	8.7		6.5
	100.0	100.0	100.0	100.0
	32	172	57	261

Chi-Square=17.6 DF=4 p<.01

<표 17>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도움 받은 경험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2.0	8.1	9.3	8.7
아니다	76.0	82.1	88.9	82.9
모르겠다	12.0	9.8	1.9	8.3
	100.0	100.0	100.0	100.0
	25	173	54	252

<표 18>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조합과 상담한 경험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5.4	7.1	9.6	8.5
아니다	65.4	81.0	86.5	80.5
모르겠다	19.2	11.9	3.8	11.0
	100.0	100.0	100.0	100.0
	26	168	52	246

<표 19>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조합 가입 두려움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5.4	19.3	21.4	19.4
아니다	42.3	63.9	60.7	60.9
모르겠다	42.3	16.9	17.9	19.8
	100.0	100.0	100.0	100.0
	26	166	56	248

Chi-Square=9.5 DF=4 p<.05

<표 20>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사장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7.2	8.2	2.0	8.0
아니다	27.6	34.2	51.0	37.0
모르겠다	55.2	57.6	47.1	55.0
	100.0	100.0	100.0	100.0
	29	158	51	238

Chi-Square=10.0 DF=4 p<.05

<표 21>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조 파업시 행동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동참 않는다	36.2	23.8	40.0	29.0
이해관계 일치하면	12.8	18.0	16.0	16.7
요구가 옳으면	12.8	11.0	4.0	10.0
무조건 동참한다	2.1	1.7	6.0	2.6
모르겠다	36.2	45.3	34.0	41.6
	100.0	100.0	100.0	100.0
	47	172	50	269

<표 22>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노동법 인지 정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매우 많이 안다	6.7	6.5	3.3	6.0
다소 아는 편이다	35.0	8.5	3.3	12.5
다소 모르는 편이	21.7	24.1	28.3	24.5
거의 모른다	36.7	60.8	65.0	57.1
	100.0	100.0	100.0	100.0
	60	199	60	319

Chi-Square=37.7 DF=4 p<.001

<표 23>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인권상담 경험 여부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있다	54.5	53.2	31.0	49.2
없다	45.5	46.8	69.0	50.8
	100.0	100.0	100.0	100.0
	55	186	58	299

Chi-Square=9.5 DF=2 p<.01

<표 24>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인권상담자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비해당	24.3	42.4	62.5	40.9
성직자		4.9		2.7
외국인노동상담소	7.8	8.8	9.4	8.6
사장·경영자	3.9	8.8	1.6	6.2
외국인 노동자	10.7	6.3	6.3	7.5
한국인 노동자		3.4	1.6	2.2
노동조합 간부	1.0	4.4	1.6	3.0
국내 본국인협회	3.9	8.3	4.7	6.5
기타	48.5	12.7	12.5	22.6
	100.0	100.0	100.0	100.0
	103	205	64	372

Chi-Square=81.9 DF=16 p<.001

<표 25>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인권상담의 도움 정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비해당	51.0	47.5	72.7	53.0
매우 큰 도움	16.3	23.0	18.2	20.9
다소 도움	16.3	15.3	5.5	13.6
거의 도움 안됨	14.3	4.4	3.6	5.9
모르겠다	2.0	9.8		6.6
	100.0	100.0	100.0	100.0
	49	183	55	287

Chi-Square=24.6 DF=8 p<.01

<표 26> 외국인노동자 종류별 임금수준 불만시 문제해결 방법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참고 기다린다	49.2	30.4	49.0	36.9
직장을 옮긴다	30.5	41.2	22.4	36.2
개인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11.9	9.3	6.1	9.3
동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요구한다	1.7	10.8	8.2	8.7
한국인노동자/노동조합과 함께 요구한다	6.8	8.3	14.3	9.0
	100.0	100.0	100.0	100.0
	59	204	49	32

Chi-Square=18.5 DF=8 p<.05

* N=393, 무응답 제외 %.

우선,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74.8 ① 남자
- 25.2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평균 32.91 세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9.0 ① 기독교(개신교)
- 21.2 ② 천주교(가톨릭)
- 15.5 ③ 불교
- 14.7 ④ 이슬람교(회교)
- 12.1 ⑤ 힌두교
- 2.7 ⑥ 기타 기독교
- 13.9 ⑦ 종교가 없다
- 0.8 ⑧ 기타

4. 귀하의 전체 가족(식구) 수는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 6.38 명

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49.9 ① 기혼
- 2.3 ② 사별
- 2.3 ③ 이혼
- 5.9 ④ 별거
- 39.6 ⑤ 미혼

6. (기혼자인 경우)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까?

- 12.8 ① 함께 왔다
- 35.4 ② 혼자 왔다
- 51.8 ③ 해당 사항 없다(혼자 산다)

7. (배우자와 함께 온 경우) 현재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8.4 ① 함께 산다
- 4.3 ② 따로 산다

35.5 ③ 해당 사항 없다(혼자 왔다)

51.7 ④ 해당 사항 없다(독신이다)

8. (배우자와 함께 온 경우) 귀하는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 3.1 ①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
- 8.9 ② 다른 직장에서 일한다
- 36.5 ③ 해당 사항 없다(혼자 왔다)
- 51.5 ④ 해당 사항 없다(독신이다)

9. 귀하의 가족 내 위치는 무엇입니까?

- 45.0 ① 가구주(가장)
- 13.2 ② 배우자
- 17.7 ③ 자녀
- 22.5 ④ 형제자매
- 1.6 ⑤ 기타

귀하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0. 귀하가 본국에서 종사하였던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11.5 ⑪ 농업 노동자
- 3.5 ⑫ 농민 또는 농장 관리인
- 8.8 ⑬ 미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 육체노동자
- 6.6 ⑭ 숙련 육체노동자
- 13.3 ⑮ 사무직 종사자
- 2.7 ⑯ 판매직 종사자
- 5.3 ⑰ 자영업자, 영세 상점·공장 소유주
- 6.2 ⑱ 기술직 종사자
- 14.6 ⑲ 전문직 종사자
- 0.9 ⑳ 기업가
- 4.4 ㉑ 관리직 종사자
- 1.8 ㉒ 행정직 종사자
- 3.1 ㉓ 주부
- 7.5 ㉔ 학생
- 0.4 ㉕ 병사
- 5.8 ㉖ 실업
- 3.5 ㉗ 기타

11.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45.7 ① 비해당(독신이다)
- 10.7 ② 농업 노동자
- 4.5 ③ 농민 또는 농장 관리인

- 3.9 ㉓ 미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 육체노동자
- 1.2 ㉔ 숙련 육체노동자
- 4.7 ㉕ 사무직 종사자
- 1.5 ㉖ 판매직 종사자
- 0.9 ㉗ 자영업자, 영세 상점·공장 소유주
- 1.2 ㉘ 기술직 종사자
- 9.5 ㉙ 전문직 종사자
- 0.6 ㉚ 기업가
- 0.6 ㉛ 관리직 종사자
- 0.3 ㉜ 행정직 종사자
- 10.4 ㉝ 주부
- 1.5 ㉞ 학생
- 0.3 ㉟ 병사
- 2.1 ㊱ 실업
- 0.6 ㊲ 기타

12. 귀하의 부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만약 돌아가셨다면 생전에 가졌던 주된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28.6 ㉑ 농업 노동자
- 16.0 ㉒ 농민 또는 농장 관리인
- 3.6 ㉓ 미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 육체노동자
- 3.9 ㉔ 숙련 육체노동자
- 4.2 ㉕ 사무직 종사자
- 3.3 ㉖ 판매직 종사자
- 4.2 ㉗ 자영업자, 영세 상점·공장 소유주
- 5.4 ㉘ 기술직 종사자
- 7.5 ㉙ 전문직 종사자
- 3.0 ㉚ 기업가
- 2.4 ㉛ 관리직 종사자
- 3.9 ㉜ 행정직 종사자
- 1.2 ㉝ 주부
- 0.9 ㉞ 학생
- 6.6 ㉟ 병사
- 2.1 ㊱ 실업
- 3.0 ㊲ 기타

13. 귀하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4.9 ㉑ 농업 노동자
- 3.7 ㉒ 농민 또는 농장 관리인
- 3.4 ㉓ 미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 육체노동자

- 4.3 ㉔ 숙련 육체노동자
- 1.2 ㉕ 사무직 종사자
- 2.8 ㉖ 판매직 종사자
- 23.0 ㉗ 자영업자, 영세 상점·공장 소유주
- 13.2 ㉘ 기술직 종사자
- 7.7 ㉙ 전문직 종사자
- 12.9 ㉚ 기업가
- 4.3 ㉛ 관리직 종사자
- 2.5 ㉜ 행정직 종사자
- 4.6 ㉝ 주부
- 5.2 ㉞ 학생
- 0.3 ㉟ 병사
- 1.2 ㊱ 실업
- 4.9 ㊲ 기타

14. 귀하는 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까?

- 45.0 ① 이사진 적이 있다
- 55.0 ② 이사진 적이 없다

귀하의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5.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10.2 ㉑ 방글라데시
- 26.7 ㉒ 중국
- 0.8 ㉓ 인도
- 1.3 ㉔ 인도네시아
- 0.8 ㉕ 이란
- 4.6 ㉖ 미얀마
- 28.5 ㉗ 네팔
- 2.8 ㉘ 파키스탄
- 21.4 ㉙ 필리핀
- 0.8 ㉚ 스리랑카
- 0.5 ㉛ 베트남

- 0.3 ㉔ 가나
- 1.0 ㉕ 나이지리아
- 0.5 ㉖ 기타 아프리카 나라

16. 귀하는 본국에서 곧장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69.4 ① 곧장 왔다
- 30.6 ② 다른 나라를 둘러 왔다

17. (다른 나라를 들렀다 왔으면)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를 들렀습니까?

- 73.1 ① 비해당(곧장 왔다)
- 0.5 ② 중국
- 16.5 ③ 홍콩
- 0.3 ④ 인도네시아
- 0.3 ⑤ 일본
- 0.3 ⑥ 말레이시아
- 0.3 ⑦ 파키스탄
- 0.8 ⑧ 필리핀
- 1.9 ⑨ 싱가포르
- 6.0 ⑩ 태국

17-1. (다른 나라를 들렀다 왔으면) 그 나라에 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74.7 ① 비해당(곧장 왔다)
- 10.7 ② 한국입국사증을 받기 위하여
- 5.6 ③ 취업을 위하여
- 9.0 ④ 기타

18. 귀하는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 14.3 ① 그렇다
- 85.7 ② 아니다

19. (만약 다른 나라에서 취업한 적이 있다면) 그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 91.0 ① 비해당(취업한 적이 없다)
- 1.5 ② 홍콩
- 1.5 ③ 인도
- 0.3 ④ 인도네시아
- 0.3 ⑤ 이란
- 0.9 ⑥ 일본
- 0.3 ⑦ 말레이시아
- 0.3 ⑧ 네팔
- 0.3 ⑨ 필리핀
- 0.6 ⑩ 싱가포르

- 0.6 ㉗ 대만
- 0.3 ㉘ 베트남
- 0.3 ㉙ 독일
- 0.3 ㉚ 북한
- 1.2 ㉛ 기타 아시아 나라
- 0.3 ㉜ 기타 아프리카 나라
- 0.3 ㉝ 기타 유럽 나라

19-1. (만약 다른 나라에서 취업한 적이 있다면) 그나라에서의 법적인 지위는 어떠하였습니까?

- 88.9 ① 비해당(취업한 적이 없다)
- 10.0 ② 합법
- 1.1 ③ 비합법

20. (앞으로) 귀하는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 34.2 ① 그렇다
- 65.8 ② 아니다

21. (앞으로 다른 나라로 취업하려 할 계획이라면) 어느 나라로 가실 계획입니까?

- 71.8 ① 비해당(계획 없다)
- 0.3 ② 중국
- 0.9 ③ 홍콩
- 0.6 ④ 이란
- 7.6 ⑤ 일본
- 0.3 ⑥ 말레이시아
- 0.3 ⑦ 네팔
- 1.8 ⑧ 싱가포르
- 2.1 ⑨ 대만
- 1.2 ⑩ 호주
- 1.2 ⑪ 영국
- 2.4 ⑫ 캐나다
- 0.3 ⑬ 프랑스
- 1.5 ⑭ 독일
- 0.3 ⑮ 이탈리아
- 7.0 ⑯ 미국
- 0.3 ⑰ 기타 유럽 나라

21-1. (앞으로 다른 나라로 취업하려 할 계획이라면) 그 나라에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 70.7 ① 비해당(계획 없다)
- 26.3 ② 합법

22. 한국에 오시기 이전에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41.0 ① 그렇다
59.0 ② 아니다

23. 귀하는 본국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 12.1 ① 한국 사람
2.6 ② 일본 사람
4.1 ③ 해외 화교
14.1 ④ 기타 외국 사람
67.1 ⑤ 외국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없다

24. 귀하는 본국에 계실 때 한국에 관한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 관한 사항	① 매우 잘 알았다	② 다소 잘 아는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거의 모르는 편이었다	⑤ 전혀 알지 못했다
A. 경제 발전 정도	22.1	29.0	22.7	17.5	8.7
B. 정치 상황	5.5	12.4	30.9	30.0	21.2
C. 1988년 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사실	35.7	25.6	18.8	14.3	5.7
D. 남북 분단과 전쟁 위험성	14.6	14.0	21.6	24.6	25.2

귀하의 교육 수준과 본국에서의 거주지 및 사회 계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부친의 교육 수준은 어떠합니까?

교육 수준	A. 귀하	B. 배우자	C. 부친
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1.4	1.6	13.4
② 국민학교	4.3	4.6	17.3
③ 중학교	8.4	9.8	16.3
④ 고등학교	30.0	16.7	25.2
⑤ 전문대학	27.6	3.9	10.8
⑥ 대학교	23.8	9.8	12.1
⑦ 대학원 석사과정	4.3	2.6	3.6
⑧ 대학원 박사과정	.3	.7	1.3
⑨ 비해당	-	50.3	-

26.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부친은 최종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아니면 중퇴하셨습니까?

거나, 휴학 중입니까?

졸업 여부	A. 귀하	B. 배우자	C. 부친
① 졸업	68.4	31.6	51.8
② 중퇴(중간에 그만 두었다)	24.2	10.9	27.7
③ 재학·휴학(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잠시 쉬고 있다)	5.8	1.8	4.0
④ 무학	1.5	1.8	16.6
⑤ 비해당	-	54.0	-

27. 귀하가 학교에 다닌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국민학교부터 계산하십시오.)

평균 10.75 년

28. 귀하가 본국에 계실 때 살던 곳의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A. 인구 수:

평균 149,851 만 명

B. 귀하가 살던 곳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농촌입니까?

- 44.5 ① 농촌
55.5 ② 도시

29. 귀하가 본국에서 태어난 곳의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A. 인구 수:

평균 103,470 만 명

B. 귀하가 태어난 곳은 도시(市 또는 鎮)입니까? 아니면 농촌(縣)입니까?

- 57.0 ① 농촌
43.0 ② 도시

30. 귀하의 영어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것의 %임)

영어와 한국어 실력	A. 영어	B. 한국어
A. 영어 /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25.1	14.0
B.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한다	72.5	81.5
C.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다	56.2	46.2
D.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대담 프로그램을 알아들을 수 있다	52.7	46.8
E. 미국인 / 한국인과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0.8	47.3
F. 간단한 영어 / 한국어 단어는 쓸 줄 안다	67.4	59.7
G. 공항이나 항만 등에 있는 영어 / 한국어 표지판을 읽을 수 있다	63.8	57.1
H. 여권이나 고용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60.7	48.5
I. 사전만 있으면 어떤 문장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63.1	53.5
J. 사전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다	49.3	36.5

31. 본국과 한국에서 귀하와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소득	본국		한국	
	A. 귀하	B. 가족	C. 귀하	D. 가족
㉑ 2.4만원 미만	15.9	10.7	-	-
㉒ 2.4~3.9만원	18.8	9.6	-	-
㉓ 4.0~7.9만원	20.9	16.5	-	-
㉔ 8.0~15만원	18.8	22.6	-	-
㉕ 16~23만원	9.4	14.9	2.2	5.3
㉖ 24~31만원	6.5	9.2	8.7	8.8
㉗ 32~39만원	4.7	3.1	9.0	19.3
㉘ 40~47만원	2.9	3.4	14.6	7.0
㉙ 48~55만원	1.1	1.1	15.5	8.8
㉚ 56~63만원	.4	1.9	18.9	7.0
㉛ 64~71만원	.7	.8	15.2	3.5
㉜ 72~79만원	-	1.5	3.1	7.0
㉝ 80~95만원	-	1.9	7.4	1.8
㉞ 96~119만원	-	1.1	3.7	12.3
㉟ 120~159만원	-	.4	1.9	14.0
㊱ 160만원 이상	-	1.1	-	5.3

32. 본국에서 귀하의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 8.7 ① 평균보다 한참 아래
15.8 ② 평균 이하

- 60.1 ③ 평균 정도
12.5 ④ 평균 이상
3.0 ⑤ 평균 보다 한참 위

33. 본국에서 귀하의 가정은 다음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1 ① 하층 계급
25.9 ② 노동 계급
53.6 ③ 중간(中間) 계급
12.0 ④ 중상(中上) 계급
3.5 ⑤ 상층 계급

34. 귀하가 본국에서 다니던 직장에서의 직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19.1 ① 재직 중 휴가 상태다(임금을 받는다)
16.8 ② 휴직 중이다(임금을 받지 않는다)
32.7 ③ 퇴직하였다
19.9 ④ 실업 상태였다(직업이 없었다)
11.6 ⑤ 기타

35. 귀하가 만약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 58.8 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12.1 ② 취업하려 다른 나라로 가겠다
25.3 ③ 어떻게든 한국에 남겠다
3.7 ④ 기타

36. 귀하가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까?

- 59.9 ① 장사나 사업 등 내 일을 하겠다
16.6 ② 전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겠다
9.3 ③ 학교에 다니겠다
14.2 ④ 기타

37. 귀하가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신다면 한국에서 얻은 다음 여러 가지 사항 중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까? (다음 네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① 한국에서 번 돈	48.9	13.5	13.5	15.9
② 한국에서 배운 기술	25.9	44.0	24.7	10.4
③ 한국에서 사귀 친구	4.7	21.0	31.2	45.7
④ 한국 직장에서의 경험	20.5	21.5	30.6	28.0

귀하가 한국에 오시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38.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 1.3 ① 1990년
- 22.7 ② 1991년
- 33.0 ③ 1992년
- 11.3 ④ 1993년
- 30.6 ⑤ 1994년
- 1.1 ⑥ 1995년

39. 귀하는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습니까?

- 77.8 ① 비행기
- 22.2 ② 배(선박)

40. 귀하가 한국에 취업하겠다고 결심한 후 여기 도착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평균 8.34 개월

41. 귀하는 어떤 사증(비자)을 발급 받아 입국하셨습니까?

- 77.1 ① 관광·방문
- 22.9 ② 연수

42. 귀하의 사증(비자)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혹은 언제 만료되었습니까?

- 1.2 ① 1990년
- 8.2 ② 1991년
- 21.9 ③ 1992년
- 16.4 ④ 1993년
- 18.2 ⑤ 1994년
- 23.7 ⑥ 1995년
- 8.5 ⑦ 1996년
- 1.5 ⑧ 1997년
- 0.3 ⑨ 1998년

43. 귀하는 어느 정도 한국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 8.2 ①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고 싶다
- 2.4 ② 3개월 이상
- 7.1 ③ 6개월 이상
- 19.2 ④ 1년 이상
- 24.7 ⑤ 2년 이상
- 24.7 ⑥ 3년 이상
- 13.7 ⑦ 영구히 머무르고 싶다

44. 귀하는 지금까지 한국을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이 번 방문을 포함하여)

- 93.1 ① 처음이다
- 6.7 ② 두번째다
- 0.3 ③ 세번째다

45. 귀하는 한국에 오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

시를 하여 주십시오.)

- 53.4 ④ 빚을 내었다
- 37.3 ⑤ 저축한 돈을 사용하였다
- 3.0 ③ 퇴직금을 사용하였다
- 9.8 ① 기타

46. 귀하가 본국을 떠나 해외 취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돈을 벌기 위하여	71.3	12.2	9.8
②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하여	9.7	45.9	17.0
③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8.0	17.2	34.4
④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취업을 위하여	3.3	10.9	11.1
⑤ 친척·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4.1	3.4	3.6
⑥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하여	1.7	7.5	16.4
⑦ 무조건 중국을 떠나고 싶었다	.8	1.3	3.3
⑧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1.1	1.6	4.3

47. 귀하가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해외 취업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한국인 친척·친지의 초청 때문에	21.3	2.7	1.8
②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친척·친지의 소개 때문에	12.8	10.6	6.6
③ 입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5.4	6.8	6.3
④ 입국 사증을 발급 받기가 비교적 쉬우므로	13.4	13.3	9.2
⑤ 미국이나 일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1.7	3.1	3.7
⑥ 한국에 친근감이 가기 때문에	15.3	18.1	12.1
⑦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21.9	25.9	23.5
⑧ 임금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7.7	17.7	21.3
⑨ 체포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6	1.7	15.4

48. 귀하는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서 또는 어디에서 주로 얻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언론 매체의 뉴스 혹은 보도 기사	34.4	9.1	10.6
② 영화, 텔레비전의 연예·오락물	5.2	11.2	11.0
③ 상품 광고	5.8	9.1	9.8
④ 올림픽게임·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	19.8	23.2	15.4
⑤ 한국산 상품	3.8	8.4	5.1
⑥ 중국 정부의 홍보	2.3	6.0	4.7
⑦ 한국 정부의 홍보	1.5	3.9	1.6
⑧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	20.4	21.4	19.7
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원	6.7	7.7	22.0

49. 귀하는 본국에서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누구 또는 어디에서 주로 얻었습니까? (중요

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직장(회사·공장·농장) 동료	28.2	7.1	7.5
② 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4.2	6.4	3.9
③ 학교 친구	6.4	4.5	9.6
④ 친척·친지	36.7	31.2	13.2
⑤ 이웃 사람	13.9	29.3	23.2
⑥ 언론 매체	7.0	17.3	21.5
⑦ 학교 교과서	.6	1.1	4.8
⑧ 교과서 이외의 책	3.0	3.0	16.2

50. 귀하는 본국에서 한국에 오기 위하여 해외취업 알선 업자(들)를 활용하십니까?

- 32.2 ① 활용하였다
67.8 ② 활용하지 않았다

A. 그 해외취업 알선 업자(들)는 누구입니까?

- 4.9 ① 공적(公的) 업자
5.7 ② 친구
9.1 ③ 해외 여행사
12.3 ④ 기타 사적(私的) 업자
68.0 ⑤ 비해당

B. 그 해외취업 알선 업자(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17.8 ① 본국
5.2 ② 한국
0.3 ③ 제3국
7.7 ④ 본국+한국
0.9 ⑥ 본국+한국+제3국
68.2 ⑤ 비해당

C. 그 해외취업 알선 업자들의 법적 지위는 어떠합니까?

- 20.2 ① 합법적·공식적
11.2 ② 비합법적·비공식적
68.6 ③ 비해당

D. 귀하는 어떻게 한국에 오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3.4 ㉠ 본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3.7 ㉡ 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21.1 ㉢ 본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9.0 ㉣ 한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17.4 ㉤ 본국에 있는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12.4 ㉥ 한국에 있는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8.7 ㉦ 본국에 있는 이웃 사람의 도움으로
1.9 ㉧ 한국에 있는 이웃 사람의 도움으로
6.2 ㉨ 본국에 있는 한국 기업 직원의 도움으로
6.2 ㉩ 본국에 있는 한국 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5.9 ㉪ 기타

51. 귀하는 한국에서 첫 번째 직업과 현재 직업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구분	첫 직업	현 직업
① 공적인 취업 알선 업자를 통하여	10.0	3.8
② 비합법·비공식적인 본국인 취업 알선 업자를 통하여	15.8	4.8
③ 비합법·비공식적인 한국인 취업 알선 업자를 통하여	12.1	4.8
④ 한국에 있는 가족·친척을 통하여	8.2	2.4
⑤ 동료 중국 교포나 중국인 친구를 통하여	17.6	29.9
⑥ 한국인 친구를 통하여	4.2	18.9
⑦ 구인(求人) 광고를 통하여	.6	3.8
⑧ 공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하여	4.2	5.8
⑨ 나는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취업하였다	27.3	25.8

52. 한국에 오기까지 사용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다음의 6줄 모두 빠짐 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으면 0을 기재하면 됩니다.)

교통비(항공료 또는 선박 운임)	\$690.80
해외취업 알선 업자 비용	\$407.94
여권 발급 비용	\$85.75
사증(비자) 발급 비용	\$129.30
기타 비용	\$389.43
계	\$1825.16

53. 귀하가 지불한 해외취업 알선 업자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15.4 ㉠ 취업 비용
15.7 ㉡ 여권 발급 비용
17.4 ㉢ 사증(비자) 발급 비용
12.8 ㉣ 병원 이용 비용
3.2 ㉤ 임신 여부 검사 비용
7.8 ㉥ 연수·훈련 비용
4.1 ㉦ 본국에서의 한국 취업 설명회 비용
6.4 ㉧ 기타

54. 귀하는 해외취업 알선 업자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 27.8 ① 현금 또는 현물
3.2 ② 분할 납부
69.0 ③ 비해당

55. 귀하는 한국에 도착하신 후 몇 번 이사하셨습니까?

- 31.8 ㉠ 전혀 이사하지 않았다
18.0 ① 1번
12.7 ② 2번

- 14.1 ③ 3번
- 7.6 ④ 4번
- 3.9 ⑤ 5번
- 1.4 ⑥ 6번
- 1.1 ⑦ 7번
- 9.3 ⑧ 8번 이상

한국에서 귀하의 직장 생활에 관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56. 귀하는 매일 직장에 출근하여야 합니까?

- 82.3 ① 그렇다
- 17.7 ② 아니다

57. 귀하가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2.5 ① 농업 및 수렵업
- 0.3 ② 임업
- 0.3 ③ 어업
- 3.4 ④ 금속 광업
- 1.5 ⑤ 기타 광업
- 3.4 ⑥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15.4 ⑦ 섬유·의복 및 가죽 산업
- 8.0 ⑧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목재 가구 포함)
- 4.0 ⑨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14.5 ⑩ 화학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0.6 ⑪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 제품 제외)
- 8.0 ⑫ 제1차 금속 산업
- 7.4 ⑬ 조립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9.3 ⑭ 기타 제조업
- 4.9 ⑮ 전기·가스 및 증기업

- 6.2 ⑯ 종합 건설업
- 2.2 ⑰ 전문직별 건설업
- 0.6 ⑱ 도매업
- 0.9 ⑲ 소매업
- 3.7 ⑳ 음식·숙박업
- 0.3 ㉑ 사업 서비스업
- 0.6 ㉒ 사회 서비스업
- 1.5 ㉓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 0.3 ㉔ 국제 기구 및 기타 외국 기관

58.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 2.2 ① 농업 및 축산 종사자
- 0.3 ② 임업 종사자
- 0.6 ③ 광원
- 3.7 ④ 금속 가공 처리공
- 4.9 ⑤ 목재 가공 종사자 및 제지공
- 1.5 ⑥ 화학물 가공공
- 1.9 ⑦ 방직공·제직공·편직공·염색공
- 0.3 ⑧ 가죽 처리공(모피 등)
- 4.0 ⑨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 0.6 ⑩ 담배 제조공
- 8.6 ⑪ 의복 제조공, 재봉공, 가구 내장공
- 0.6 ⑫ 제화공, 가죽 제품 제조공
- 3.1 ⑬ 가구 제조공, 관련 목공
- 3.1 ⑭ 대장공, 공구 제작공 및 기계 공구 조작공
- 2.5 ⑮ 기계 설비공, 기계 조립공 및 정밀 기구 제작공(전기 제외)
- 6.5 ⑯ 전기 설비공 및 관련 전기·전자공
- 2.8 ⑰ 연관공·용접공·판금공, 구조 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 0.6 ⑱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 0.6 ⑲ 유리 성형공, 도기공
- 10.5 ⑳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
- 2.5 ㉑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공
- 3.1 ㉒ 인쇄공
- 0.6 ㉓ 도장공
- 6.2 ㉔ 벽돌공, 목공 및 건설 노동자
- 0.3 ㉕ 고정 기관 및 관련 장비 운전원
- 0.3 ㉖ 운전사
- 10.5 ㉗ 단순 노무자
- 6.8 ㉘ 기타 생산·기능직 종사자, 육체 노동자
- 4.6 ㉙ 요리사, 식당 종업원
- 2.2 ㉚ 가정부, 식모
- 0.9 ㉛ 기타 서비스직 종사자

- 0.6 ㉑ 사무직 종사자
- 0.6 ㉒ 외국어 학원 강사, 관광 안내원, 통역 및 번역원
- 0.6 ㉓ 가수 및 무용수
- 0.9 ㉔ 기타 전문·기술직 종사자
- 0.3 ㉕ 구직자(현재 직업을 구하고 있음)

59.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A. 귀하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숙련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직장의 윗사람이나 사장은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숙련 수준을 인정하여 줍니까?

숙련의 정도	A. 숙련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숙련도	B. 인정받은 숙련도
① 미숙련	11.5	10.0
② 반숙련	30.5	34.0
③ 숙련	47.3	43.2
④ 모르겠다	10.8	12.9

60. (반숙련 또는 숙련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그 기술을 습득하였습니까?

- 8.1 ① 본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
- 16.7 ② 본국에서 직업 훈련을 통하여
- 28.0 ③ 한국에서 공식적인 현장 훈련(기업 내 교육)을 통하여
- 21.5 ④ 한국에서 비공식적인 현장 훈련(기업 내 교육)을 통하여
- 3.3 ⑤ 기타
- 22.4 ⑥ 해당 사항 없다

61. 귀하의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A. 행정 구역:

- 43.9 ① 서울 특별시
- 15.7 ④ 인천 광역시
- 40.4 ⑦ 경기도

B. 귀하의 직장은 농촌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습니까?

- 38.0 ① 농촌
- 62.0 ② 도시

62. 귀하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국인	5.99 명
기타 외국인	2.45 명
한국인	38.27 명
계	49.39 명

63. 귀하는 직장에서 하루에 대략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평균 10.91 시간

64. 귀하는 하루에 대략 몇 시간 정도 여가가 있습니까?

평균 3.66 시간

65. 귀하가 하루에 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1주일에 몇 일 정도입니까?

- 10.8 ① 0일
- 2.3 ② 1일
- 4.2 ③ 2일
- 3.6 ④ 3일
- 6.2 ⑤ 4일
- 9.8 ⑥ 5일
- 40.5 ⑦ 6일
- 22.5 ⑧ 7일

66. 귀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습니까?

- 41.9 ① 받는다
- 47.6 ② 받지 않는다
- 10.5 ③ 비해당(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

67. 귀하는 어느 정도 자주 야간 작업을 합니까?

- 48.7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4.6 ② 1달에 1번 정도
- 12.4 ③ 1달에 2번 정도
- 4.6 ④ 1달에 3번 정도
- 7.2 ⑤ 1주일에 1번 정도
- 8.2 ⑥ 1주일에 2번 정도
- 7.2 ⑦ 1주일에 3번 정도
- 7.2 ⑧ 1주일에 4번 이상

68. 귀하는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 받습니까?

- 18.6 ① 받는다
- 33.4 ② 받지 않는다
- 47.9 ③ 비해당(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

69. 귀하는 어느 정도 자주 일요일(또는 휴일)에 합니까?

- 36.8 ① 매주
- 3.4 ② 1달에 3번 정도
- 16.4 ③ 1달에 2번 정도
- 5.6 ④ 1달에 1번 정도
- 19.8 ⑤ 전혀 쉬지 않는다
- 18.0 ⑥ 규칙적이지 않다

70. 귀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습니까?

- 26.3 ① 받는다
36.1 ② 받지 않는다
37.7 ③ 비해당(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71. 귀하는 어느 정도 자주 상여금(보너스)을 지급 받습니까?

- 51.5 ① 전혀 받지 않는다
14.9 ② 1년에 1번 정도
17.8 ③ 1년에 2번 정도
12.0 ④ 1년에 3번 정도
3.6 ⑤ 1년에 4번 정도
0.3 ⑥ 1년에 5번 정도

72. 귀하는 직장에서 다음 중 어떤 것들을 제공받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61.4 ㉠ 아침 식사
74.9 ㉡ 점심 식사
60.0 ㉢ 저녁 식사
26.7 ㉣ 간식
55.2 ㉤ 숙소
13.7 ㉥ 의복
13.0 ㉦ 의료 서비스
7.6 ㉧ 상해(傷害) 보험

73. 귀하의 한 달 평균 임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의 6줄 모두 빠짐 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본급	₩480,061.02
초과 근무 수당	₩30,882.97
특별 근무 수당 (보기: 휴일 근무·야간 근무)	₩5,752.17
상여금(1달 단위로 계산)	₩9,406.53
기타 부가 급여	₩6,899.56
총 수입	₩576,740.93

74. 귀하의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의 6줄 모두 빠짐 없이 기재하

여 주십시오.)

식료품·음료수 비용	₩70,795.36
주거 비용	₩10,621.79
의복·신발 비용	₩38,619.15
교통 비용	₩20,606.33
기타 비용	₩33,437.77
총 지출	₩180,581.65

75. 귀하는 본국에 송금을 하십니까?

- 83.4 ① 송금한다
16.6 ② 송금하지 않는다

A. 귀하는 어떻게 본국으로 송금하십니까?

- 1.9 ① 우편으로(보기: 편지)
12.9 ② 내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15.1 ③ 한국인 친구나 친척의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6.0 ④ 고용주의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28.1 ⑤ 귀국하는 친구·친지를 통하여
18.9 ⑥ 귀국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17.0 ⑦ 비해당

B. 귀하의 한 달 평균 송금 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284,457.69 만 원

C. 귀하는 왜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으십니까?

- 4.4 ① 귀국할 때 내가 직접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1.6 ②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3 ③ 송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5.7 ④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0.3 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6 ⑥ 기타
86.0 ⑦ 비해당

76. 귀하가 현재 하시는 일은 본국에서의 직업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다른
 니까?

- 4.0 ① 정확히 똑 같다
15.2 ② 다소 비슷한 편이다
13.4 ③ 다소 다른 편이다
67.4 ④ 전혀 다르다

77. 귀하는 현재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5.9 ① 매우 만족한다
- 33.4 ② 만족한다
- 22.0 ③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 19.8 ④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 7.7 ⑤ 다소 불만인 편이다
- 8.4 ⑥ 불만이다
- 2.8 ⑦ 매우 불만이다

78. 귀하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몇 번째 직장입니까?

평균 3.09 번째 직장

79. 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 42.7 ① 있다
- 57.3 ② 없다

79-1. 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평균 0.89 번

80. 귀하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장시간 노동	47.4	10.7	8.9
② 열악한 작업 조건	4.5	10.0	10.5
③ 직업병	2.9	4.1	2.0
④ 산업 재해	1.9	3.3	2.8
⑤ 체불 임금	10.7	9.6	5.7
⑥ 여러 가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3	1.1	.8
⑦ 저임금	12.3	23.2	10.5
⑧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4.2	4.4	8.5
⑨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	1.9	4.4	3.6
⑩ 사장과의 갈등	1.0	2.2	3.6
⑪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4.5	8.1	9.7
⑫ 한국인과의 차별	4.9	10.0	5.7
⑬ 육체적 폭력: 구타	.3	4.1	5.7
⑭ 육체적 폭력: 발로 걷어찬다	.0	1.1	2.0
⑮ 육체적 폭력: 뺨을 때린다	.3	1.1	5.3
⑯ 육체적 폭력: 괴롭힌다	.3	.0	3.6
⑰ 육체적 폭력: 성적 희롱	.6	.7	2.4
⑱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	.0	1.1	3.2
⑳ 기타	1.6	.7	5.3

81. 만약 귀하가 직장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귀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23.1 ① 참고 견딘다
- 31.4 ②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
- 28.1 ③ 사장에게 이야기한다
- 12.0 ④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한다
- 5.4 ⑤ 기타

82. 만약 귀하가 임금 수준에 불만이 있다면, 귀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36.9 ① 사장이 알아서 올려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 36.2 ②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
- 9.3 ③ 개인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 8.7 ④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 9.0 ⑤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한다

83. 귀하의 직장에서는 귀하에게 어떤 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36.8 ㉠ 작업복
- 66.3 ㉡ 작업용 장갑
- 26.5 ㉢ 면 마스크
- 19.3 ㉣ 작업용 신발 또는 안전화
- 13.1 ㉤ 안전 마스크
- 8.8 ㉥ 안전 모자(헬멧)
- 6.9 ㉦ 보안경
- 10.1 ㉧ 기타

84. 귀하 또는 귀하의 동료 노동자가 작업 중에 다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27.5 ㉠ 그렇다. 내가 다친 적이 있다
- 17.9 ㉡ 그렇다.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다친 적이 있다
- 12.5 ㉢ 그렇다. 동료 한국인 노동자가 다친 적이 있다
- 50.2 ㉣ 아무도 다친 적이 없다

85. 귀하 또는 귀하의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다친 적이 있다면, 그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19.6 ① 회사 또는 사장
- 1.6 ② 상해(傷害) 보험
- 15.8 ③ 나 또는 우리(가진 돈)
- 2.5 ④ 나 또는 우리(친구에게 빌 돈)
- 0.9 ⑤ 의사(또는 무료 치료)
- 2.8 ⑥ 기타

56.8 ⑩ 비례당(아무도 다친 적이 없다)

86. 다음 질문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A.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2.5	39.2	48.3
B. 귀하는 현 직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4.3	84.1	11.6
C. 귀하는 본국에서 노동조합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28.7	64.8	6.5
D. 귀하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8.7	82.9	8.3
E. 귀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8.5	80.5	11.0
F.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19.4	60.9	19.8
G.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은 귀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8.0	37.0	55.0

87. (만약 귀하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면) 귀하는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 69.6 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 15.9 ② 산업기술 연수생이기 때문에
- 2.8 ③ 우리 회사 사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 2.1 ④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4.5 ⑤ 노동조합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 5.2 ⑥ 기타

88. 어떤 사람이 귀하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35.3 ① 가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 20.4 ② 외국인으로서 노동조합에 관심은 있지만, 가입하지 않겠다
- 4.1 ③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겠다
- 3.7 ④ 노동조합 자체에 반대하므로, 가입하지 않겠다
- 1.9 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
- 34.6 ⑥ 사태를 기다리며 지켜보겠다

89.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어떤 이유로 파업을 감행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29.0 ① 절대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
- 16.7 ② 쟁점이 나와 관련된 것일 때는 파업에 동참하겠다
- 10.0 ③ 노동조합의 요구가 합당할 때는 파업에 동참하겠다
- 2.6 ④ 어떤 쟁점이라도 파업에 동참하겠다
- 41.6 ⑤ 모르겠다

90. 귀하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6.0 ① 매우 많이 안다
- 12.5 ② 다소 아는 편이다

24.5 ③ 다소 모르는 편이다

57.1 ④ 거의 모른다

91. 누가 귀하의 여권과 사증을 갖고 있습니까?

- 45.7 ① 내가 갖고 있다
- 42.0 ② 사장 또는 경영자
- 1.2 ③ 본국인 친구
- 2.1 ④ 한국인 친구
- 0.3 ⑤ 본국인 친척
- 0.9 ⑥ 한국인 친척
- 7.7 ⑦ 기타

92. 왜 귀하의 회사가 귀하를 고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4.5 ① 한국 노동자들이 힘들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 26.0 ②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 2.0 ③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 4.3 ④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책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 29.9 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 3.3 ⑥ 기타

93.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A. 귀하는 누가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7.5 ① 한국인 노동자
- 34.0 ② 외국인 노동자
- 48.5 ③ 차이가 없다

B.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 14.0 ① 매우 크다
- 43.8 ② 크다
- 21.1 ③ 다소 큰 편이다
- 9.9 ④ 거의 차이가 없다
- 11.2 ⑤ 차이가 없다

C. 귀하는 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0.7 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숙련 수준이 낮기 때문에
- 69.3 ②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94. 귀하는 직장에서 자신이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47.0 ① 그렇다
- 22.3 ② 아니다
- 30.7 ③ 모르겠다

95. 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산업 재해 보상 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60.0	8.7	10.2
② 지방 관서에 상담소(또는 민원 센터)를 설치한다	10.0	30.6	9.8
③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0.0	30.6	21.7
④ 공무원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3.3	5.6	6.6
⑤ 한국인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	8.7	2.9
⑥ 구직(求職)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4	9.5	15.6
⑦ 주거(住居)·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2.8	8.6
⑧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8.5	3.6	24.6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 전반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96. 귀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대체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9.0 ① 매우 만족한다
 38.0 ② 만족한다
 20.4 ③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19.4 ④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6.5 ⑤ 다소 불만인 편이다
 4.3 ⑥ 불만이다
 2.5 ⑦ 매우 불만이다

97/98. 귀하는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 평일여가 | 휴일여가 | |
| 63.7 | 52.6 | Ⓐ 잠잔다 |
| 55.7 | 53.9 | Ⓑ 목욕한다 |
| 72.0 | 60.7 | Ⓒ 텔레비전을 본다 |
| 24.6 | 30.8 | Ⓓ 비디오를 본다 |
| 50.8 | 43.6 | Ⓔ 음악을 듣는다 |
| 40.0 | 36.1 | Ⓕ 신문을 읽는다 |
| 37.5 | 34.9 | Ⓖ 한국 노래를 배운다 |
| 23.4 | 26.5 | Ⓖ 술을 마신다 |
| 22.8 | 24.0 | ① 운동을 한다 |
| 33.8 | 43.0 | ② 쇼핑을 한다 |
| 26.2 | 29.6 | Ⓚ 산책한다 |
| 11.1 | 15.6 | ④ 여행한다 |
| 8.0 | 11.5 | Ⓜ 근교를 드라이브(자동차 운전)한다 |
| 44.3 | 57.6 | Ⓝ 친구에게 놀러 간다 |
| 7.1 | 9.0 | Ⓞ 데이트(연애)한다 |
| 12.6 | 12.5 | Ⓟ 전자 오락(컴퓨터 게임)을 한다 |
| 6.8 | 9.7 | Ⓠ 도박을 한다 |

- 16.6 18.4 ⑧ 영화 보러 간다
 16.6 20.9 ⑨ 노래방에서 노래한다
 17.2 23.1 ⑩ 놀이공원(보기: 서울대공원)에 간다
 36.3 46.1 ⑪ 교회·이슬람사원·절에 간다
 20.6 28.0 ⑫ 관광한다
 12.6 13.8 ⑬ 기타

9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숙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8.9 ① 작업장·공장·공사장
 55.6 ② 회사 기숙사
 3.8 ③ 기타 기숙사
 18.5 ④ 셋 방
 2.2 ⑤ 친구·친척 집
 4.8 ⑥ 셋 집
 3.8 ⑦ 개인 숙박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예: 여관·여인숙)
 2.2 ⑧ 기타

100. 귀하가 살고 계시는 숙소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한 방에는 몇 명이 거주하십니까? (다음의 두 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 방에 거주하는 사람 수	3.94 명
방의 크기	폭: 3.23m × 길이: 4.16m

101. 귀하의 숙소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설비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56.8 Ⓐ 샤워·목욕 시설
 32.3 Ⓑ 난로
 64.6 Ⓒ 난방시설
 38.5 Ⓓ 가스 렌지
 50.6 Ⓔ 냉장고
 28.6 Ⓕ 세탁기
 40.4 Ⓖ 라디오·녹음기
 11.8 Ⓖ 전축·오디오
 71.1 ① 텔레비전
 13.4 ② 비디오
 29.2 Ⓚ 전화
 27.6 ④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부엌

102. 귀하가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 구입해 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49.7 Ⓐ 가전 제품

- 50.0 ㉞ 의복
- 36.9 ㉟ 담요·이불
- 40.3 ㊱ 신발
- 23.5 ㊲ 한국 특산품
- 21.1 ㊳ 컴퓨터
- 4.7 ㊴ 자전거
- 8.7 ㊵ 오토바이

103. 한국에는 귀하의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음의 4줄 모두 빠짐 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국인	14.32 명
기타 외국인	4.93 명
한국인	7.47 명
계	24.65 명

104. 일반적으로 귀하가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① 외국인을 차별한다	② 친절하지는 않으나 차별하지 않는다	③ 친절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A. 사장	36.4	26.5	37.2
B. 직장 상사, 작업 감독	31.8	27.6	40.6
C. 동료 한국인 노동자	17.0	24.6	58.5
D. 직장 근처의 이웃 사람	15.9	25.6	59.5
E. 직장 근처의 가게 주인	13.2	25.4	61.4
F. 한국 사람 일반	18.0	29.6	52.4

105. 귀하가 한국에서 만난 다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절하였습니까?

한국 사람들	① 매우 친절하였다	② 친절하였다	③ 보통이었다	④ 불친절했다	⑤ 매우 불친절했다
A. 해외취업 알선 업자	7.5	23.9	36.3	7.1	25.2
B.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	5.2	21.3	36.1	13.9	23.5
C. 경찰관	7.7	28.9	34.0	10.6	18.7
D. 집 주인(또는 여관 주인)	13.8	37.6	40.8	6.0	1.8
E. 직장 근처의 이웃 사람	9.9	41.4	39.2	8.2	1.3
F. 직장 근처의 가게 주인	10.0	45.4	38.9	4.4	1.3
G. 동료 한국인 노동자	14.2	47.6	26.2	9.4	2.6
H. 직장 상사, 작업 감독	8.6	35.0	30.9	12.3	13.2
I. 직장의 사장(또는 경영자)	16.2	38.9	18.4	14.1	12.4
J. 외국인 노동 상담소 상담원·자원 봉사자	46.9	31.9	17.4	1.9	1.9
K. 한국 사람 일반	6.7	37.4	47.5	6.7	1.7

106. 가능하다면, 귀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까?

- 48.0 ① 그렇다
- 52.0 ② 아니다

107. 가능하다면, 귀하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 36.1 ① 그렇다
- 63.9 ② 아니다

108. 귀하는 한국에서 본국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까?

- 67.6 ① 그렇다
- 32.4 ② 아니다

109. 한국에 본국인 노동자들의 협회나 조직 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 32.7 ① 그렇다
- 67.3 ② 아니다

110.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분	첫째	둘째	셋째
① 음식	23.8	6.8	7.5
② 의복	.3	3.6	.8
③ 주거·숙소	7.9	7.2	8.3
④ 금전 문제	6.9	5.0	10.9
⑤ 결혼생활·성생활 문제	2.6	2.5	.0
⑥ 건강 문제	3.3	12.9	8.3
⑦ 기후·날씨	6.9	9.7	8.3
⑧ 언어 문제	12.5	26.9	12.4
⑨ 문화적 차이 문제	3.6	5.4	6.4
⑩ 여권·사증(비자) 문제	24.1	10.8	22.2
⑪ 취업 알선 업자에 의한 정기적인 착취	2.6	3.6	4.9
⑫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	5.3	5.4	7.5
⑬ 기타	.0	.4	2.6

111. 귀하의 현재 출입국 관리법 상의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3.7 ① 관광·방문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법정 체류 기간 이내에 있다
- 63.4 ② 관광·방문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했으나 법정 체류 기간을 초과하였다
- 17.3 ③ 연수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산업체에서 기술 연수 중이다
- 5.6 ④ 연수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했으나 법정 체류 기간을 초과하였다

112. 귀하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여기 오시기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16.0 ① 매우 많이 좋아졌다
- 19.7 ② 상당히 좋아졌다
- 38.6 ③ 좋아졌다
- 11.3 ④ 마찬가지로다
- 7.5 ⑤ 나빠졌다
- 4.4 ⑥ 상당히 나빠졌다
- 2.5 ⑦ 매우 많이 나빠졌다

113. 만약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5.7 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32.1 ② 권장한다
- 14.8 ③ 다소 권장하는 편이다
- 14.8 ④ 권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 9.8 ⑤ 다소 반대하는 편이다
- 10.2 ⑥ 반대한다
- 2.6 ⑦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14. 귀하는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 49.2 ① 있다
- 50.8 ② 없다

A. 누구와 상담하였습니까?

- 2.7 ① 성직자
- 8.6 ②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 6.2 ③ 사장·경영자
- 7.5 ④ 외국인 노동자
- 2.2 ⑤ 한국인 노동자
- 3.0 ⑥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
- 6.5 ⑦ 국내에 있는 본국인 노동자 협회
- 22.6 ⑧ 기타
- 40.9 ⑨ 비해당(상담한 적이 없다)

B. 그 상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20.9 ①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13.6 ② 다소 도움이 된 편이었다
- 5.9 ③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6.6 ④ 모르겠다
- 53.0 ⑤ 비해당(상담한 적이 없다)

다음 질문은 "불법 체류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15. 귀하는 한국에 오시기 이전에 자신이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 46.9 ① 알았다
- 31.9 ② 몰랐다
- 21.2 ③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116. 귀하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9.2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46.3 ② 걱정한다
- 20.5 ③ 매우 걱정한다
- 2.7 ④ 기타
- 21.4 ⑤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117. 귀하는 "불법 체류자는 한국을 떠날 때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45.8 ① 안다
- 31.9 ② 모른다
- 22.3 ③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118. 귀하가 부담해야 할 불법 체류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 13.2 ① 50만원 미만
- 10.2 ② 50~99만원
- 8.4 ③ 100~299만원
- 1.2 ④ 300~499만원
- 1.8 ⑤ 500만원 이상
- 43.7 ⑥ 모르겠다
- 21.6 ⑦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119.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21.3 ① 돈이 없다고 우기겠다
- 24.3 ② 벌금을 내겠다
- 26.1 ③ 모르겠다
- 6.6 ④ 기타
- 21.6 ⑤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120. 만약 당국이 귀하를 추방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33.8 ① 순순히 한국을 떠날 것이다
- 12.9 ② 일단 몸을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가, 앞으로 언젠가 출국할 것이다
- 3.9 ③ 당국에 체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8.4 ④ 한국에서 영원히 숨어 살 것이다
- 19.5 ⑤ 모르겠다
- 21.6 ⑥ 비해당(합법적인 산업기술연수생이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2. 14 노동부 예규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연수를 받는자의 보호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 사업장에서 기술·기능의 습득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귀국후에는 당해 국가의 중추적 산업인력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생의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수생은 법무부 훈령 제 304호('94. 9. 1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이 지칭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의 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으로 한다.

제4조(연수생의 지위) 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연수생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제5조(연수계약 체결의 당사자)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령, 직업안정법령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생과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약) 연수생의 연수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계약서의 내용등) ① 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를 시작하기전에 수당, 연수시간등 연수조건이 포함된 연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연수생이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등을 통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수당의 결정, 계산, 지불방법등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제세, 의료보험료 등 법정 공제 등에 관하여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 명부와 연수계약서상 연수생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수생이 사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연수생의 여권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연수생이 귀국할 때에는 해당 연수생의 수당등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국전에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직접·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②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제9조(안전보건 관리)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표지·게시등에 대해 도해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수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등을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과의 보건관리자등을 활용하여 연수생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상의 지원) ① 사업주는 연수생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등에 대해 연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지원) ① 연수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연수생이 시험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연수생이 연수계약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접수, 근무시간 배려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생 교육) ① 사업주는 연수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기술·기능의 습득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사회에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문화, 관습, 국내법규 및 외출시 준수사항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충상담) 사업주는 연수생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지회에 설치된 연수생 민원신고 또는 고충상담센터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연수생의 편의제공)** ① 사업주는 연수생이 급식·의료·교양·문화·체육 및 휴양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체의 휴·폐업등으로 연수계약기간중 연수가 중단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추천기관등과 협의하여 연수사업장의 변경, 출국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연수관계를 종료하고, 조속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생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주는 연수생을 10인이상 연수시킬 때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등을 관리하기 위해 연수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생 배치상황의 보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은 연수생을 연수사업장에 배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과 배제)**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수생 배정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추천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시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제6조·제7조·제30조·제36조·제42조·제44조 내지 제46조, 제102조 내지 제112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5. 3. 1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사업주는 이 지침 시행당시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한 연수계약을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1995. 2. 28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생 배치상황 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 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수	총	명	남	명	여	명
연수생수	총	명	남	명	여	명

2. 연수생 배치상황

연 번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채용일자	비 고
1						
2						
3						

* 부족시 별지사용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외국인력 · 현황과 대책

- 노동부장관 기자회견담화(1995.2.14) -

<< 외국인력의 현황 >>

1. '94.12.31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약 82천명으로 추정

취업 및 기술 연수					
총 계	합법취업1) : 해외투자등 2) : 중기협 3) : 소 계				불법취업4)
81,824	5,265	9,512	18,816	33,593	48,231
(100)	(6.4)	(11.6)	(23.0)	(41.0)	(59.0)

(명,%)

- <주> 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으로서 취업
 2) 해외투자등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을 위한 연수자
 3)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체에 허용된 연수생
 4) 당초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하여 현장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연수생중 무단 이탈자

* '94년도 1차 중기협 추천 연수생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0개국으로 부터 입국

* 작년말 현재 중기협 추천 연수생중 3,018명이 연수기업체로부터 이탈(연수생의 16%)
 - 나라별 연수생대비 이탈자의 비율은 중국(24.9%), 파키스탄(25.5%), 미얀마(20.0%),
 네팔(18.6%), 필리핀(11.4%)
 - 이탈자의 절반이 입국 1개월이내, 80%이상이 2개월이내에 잠적

2. '94년도에 중기협 추천 산업기술연수생은 1차로 20,000명, 추가로 10,000명(섬유 7,500,
 신발 2,500)을 배정하여 도입중

<< 외국인력 활용, 관리 및 연수제도상의 문제점 >>

== 개요 ==

- * 기본적으로 산업인력의 수급예측과 외국인력의 활용에 관한 정책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제도를 설정
 - 값싼 단순기능인력 활용에만 치중
 - 연수제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
- * 연수생선발, 출입국관리, 사후관리, 무단이탈자, 불법취업자의 단속 등 연수제도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

* 외국인력의 활용과 연수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개선노력 또는 종합조정 등 책임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1. 연수생 신분때문에 기본적 처우와 연수조건이 열악함
- * 연수수당, 연수(근로)시간, 산재보상, 안전보건과 건강관리,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소정기준의 보장을 받지 못함

* 반면, 불법체류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는 모순발생

2. 연수생의 무단이탈 현상의 빈발

*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의 연수수당(월평균 252천원)보다 불법체류취업자의 임금(월평균 426천원)이 높아 이탈을 조장

* 특히 중국 연수생의 경우 송출과정에서부터 송출업체, 브로커 등과 부정거래 또는 과도한 송출비용 때문에 이탈 경향이 극심

3. 연수업체의 인식부족과 관리 소홀

- * 상당수의 연수업체가 연수생을 저임, 단순노동력으로 취급
- * 일부 악덕 사업주등의 장시간 작업, 폭행, 폭언, 외출억제, 여권보관관리 등의 비인간적 대우

4. 불법체류 취업자의 단속 미흡

* 연수이탈자, 불법체류취업자 및 불법알선업자에 대한 단속미흡으로 불법취업자가 과다(외국인력의 59%)

* 불건전한 사업주의 불법취업자 선호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의 저해 요인

* 절도, 폭력, 불법취업알선, 내국인과의 결혼 등 각종 범죄의 소지

5. 연수생 송출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

* 송출연수생 선발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보증금 등 징수

* 송출기관 국내지사등에 의한 연수생 송금대행 과정에서 송금지연 또는 착복 등 사례 발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연수협력단)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과 서비스 자세 부족

<< 개선대책 >>

== 기본 방침 ==

* 외국인력의 활용은 국내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부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완
- * 불법취업 외국인의 단속을 강화하여 연차별로 출국조치하고 이를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점진적 대체

* 근원적으로 외국인력의 편법적 도입을 지양하고 외국인력의 국내취업 및 관리체제를 법제화

1. 연수생의 처우와 기본적 연수조건 개선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호
 - 폭행, 강제근로금지
 -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화불 및 금품청산
 - 법정근로시간, 휴식, 휴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 최저임금수준의 보장
 - 산업안전 보건과 건강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적용
- *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보장과 편의제공(노동부, 연수업체)
- * 근본적 처우와 연수조건 보장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노동부, '95.3.1 시행)
 -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영요령], [연수계약서]등 개정(통상산업부, 중기협)

2. 연수생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와 감독 강화

-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불량기업체에 대하여 연수생 배정 중단
 - 지침 불이행기업체에 대하여는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상습 또는 악덕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이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조치
- * 고충상담 또는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행정기능보강
 - 고충상담, 민원신고센터 설치(노동부 45, 출입국관리사무소 12, 중기협 11개소)
 - 전담검사제 운영(검찰)
- * 여권 본인 소지와 휴무일 외출 보장 등(중기협, 연수업체)

3. 연수생 송출 및 입국관리체제 강화

- * 송출국의 송출업무담당기관은 그 나라의 국가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함을 원칙
 - 민간기구나 업체가 이를 담당할 경우 한국내 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중기협이 그 임무를 맡도록 함(통산부, 외무부, 중기협)
- * 송출연수생 선발시 중기협 직원의 현지파견 지도(통산부, 중기협)

- * 연수생의 입국전후 교육강화(통산부, 중기협, 연수업체)
 - 입국전 2주(종전6일) 및 입국후 1주(종전 1박2일)
 - 연수업체 관리담당자 교육 : 3일
 - 연수업체 배정후 업체별 교육 : 수시

* 입국즉시 AIDS등 건강진단(보건복지부, 중기협)

* 송출국의 주한공관에 노무관 배치 또는 노무담당관 지정(외무부)

4.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 취업자의 단속강화

- *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 취업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집중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
- * 연수기간(최장 2년)의 엄수와 계약기간 만료자의 귀국조치 철저(중기협, 연수업체)
-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알선업체의 적발 및 단호 조치
- * 동향조사 및 단속요원의 보강과 부처간 긴밀협조 등(법무부, 노동부)
 - 출입국관리소 요원 증원
 - 근로감독관, 직업안정담당공무원 활용
 - 불법체류자 보호시설 확충

<< 근원적 대책(법률화 추진) >>

= 기본 방침 =

- * 외국인력의 도입,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제도는
 - 일본형의 [기능실습제도]와
 - 독일, 싱가포르, 대만형의 [고용허가제도]로 대별됨
 - * 이번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내용은 [외국인력정책연구반]의 연구보고서('94.12)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개선사항을 모두 수용한 것임
 - * 따라서 현행제도의 개선대책은 궁극적으로 외국인력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단기적, 단계적 시책 방안임
 - * 노동부는 이 개선대책을 시행하면서 년내에 광범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고용(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력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방침임
- #### 1. 입법추진을 위한 주요검사사항
- * 단순기능인력의 국내취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함
 - * 국내의 고용유휴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국내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을 최소화함

*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복지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방안

*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

* 합법적 취업 외국인력에 대한 동등한 대우보장

* 외국인력정책의 유연성 확보

2. 법칙의 기본골간

* 외국인력의 고용을 위한 업종별, 기능별 수요책정절차

* 고용허가제도에 있어서 취업을 위한 절차(독신근로자원칙 등)

* 능력개발기금제도의 설정

* 고용보증금 및 고용분담금 납부제도

* 근로감독기능 및 공공취업안정기관의 활용 근거

* 노사정 3자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참고자료 : 각국의 제도 >

1. 독일 : '71.3월 근로허가법을 제정하여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 근거 마련
- '83년 귀국촉진법을 제정하여 귀국근로자에게 귀국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귀국을 장려
2. 일본 : 외국인연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위해 '93.4월 기능실습제도를 창설하여 연수기간의 1.5배까지 취업허용
- '91.10 연수생제도 확대와 중소기업의 연수생 활용 지원을 위해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 설립
3. 대만 : 1985년부터 외국인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1989년부터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 고용허가를 실시하고, '92년 [외국인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제정
4. 싱가포르 : '80년대까지는 [고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고용을 규제하였으나
- 외국인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0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 시행
5. 미국, 영국, 프랑스 : 노동허가제